

##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1) 회계감독 및 외부감사인 감독

김 유 경 상무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리더

youkyoungkim@kr.kpmg.com

### 1. 회계감독과 외부감사인 감독의 의미

우리나라는 2016년 IMD<sup>1)</sup> 평가 회계투명성 부문에서 61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건설업, 조선업 등 수주산업 기업들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입는 금전적 피해는 물론, 자본시장 내 상호신뢰를 약화시키는 이러한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경영진,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감독당국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책임의 경중을 떠나 분식회계 사태를 예방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이하 ‘감사기구’)라고 볼 수 있다. 회사의 감사기구는, 기업 내부에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외부감사인과의 협력에 기반하여 검토 및 감독함으로써 분식회계, 횡령·배임, 탈세와 같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조작 또는 허위공시하는 데서 기인하는 각종 부정사안을 예방 또는 조기 적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주로 외부감사제도에 의존하던 회계투명성 확보의 노력이, 기업 내부의 통제장치인 감사위원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와의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것은, 기업 내부로부터 원천적으로 분식위험을 근절하는 것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절실한 공감각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 미국에서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 이하 ‘SOX’)은 감사위원회에 의한 회계감독이 회계투명성 확보의 핵심적 장치임을 명백히 표명한 대표적인 법이다. 엔론, 월드컴 등 대규모 분식스캔들 발생 직후 태동한 SOX 이전에는, 미국에서조차 감사위원회의 회계감독 역할과 이를 위한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명문화한 규정은 거의 없었다. 대규모 분식스캔들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분식의 주체인 기업의 내부통제장치 구축과 운영이 회계투명성 확보의 최우선 과제임을 사회적으로 공감하게 한 뼈저린 경험이었다. 일차적인 내부통제장치로서 경영진 스스로 ‘재무보고 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동 내부통제를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외부감독장치로서 외부감사인이 내부통제를 감사하도록 의무화하고, PCAOB<sup>2)</sup>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를 감리함으로써 기업의 노력을 견인하는 구조이다.

한국도 미국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배경(SK글로벌, 대우 등 분식스캔들)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에서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1)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2)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 한국의 금융감독원 역할 수행

와 감사기구의 동 제도에 대한 평가의무<sup>3)</sup> 및 외부감사인인 검토의무를 명시하였고, 동 제도를 근간으로 분식을 저지른 경영자를 형사처벌하고 집단소송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sup>4)</sup>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 모두, 기업의 내부통제장치(감사위원회와 경영자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를 회계투명성 확보의 핵심적 제도로 명문화 하고 있으나,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여전히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이를 대변하듯 분식스캔들로 사회가 들쭉날쭉할 때마다 외부감사 품질 이슈와 함께 지정감사제도의 확대,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강화 및 품질감리 강화와 같은 외부감사 중심의 규제 강화 논의가 활발해 진다. 하지만, SOX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었던 과거의 분식스캔들과 최근의 분식스캔들은 모두, 경영자에 의해 의도된 분식은 외부감사제도만으로 적발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어, 분식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통제장치를 통한 분식의 사전적 예방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국 감사기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이 회계감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감사기구의 회계감독 역할이 외부감사인 감독 역할을 포함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감사기구는 전문성과 활동시간의 제약 등으로 독자적으로 회계감독을 수행할 수 없는 한편, 경영진의 영향력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막아 외부감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의 권한을 감사기구에 부여하여,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감사위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4년 발의된 외감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동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회계감독 및 외부감사인 감독을 감사기구의 핵심적 역할로 명시한 법규들을 살펴봄으로써, 동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재고(再考)해 보고자 한다.

## 2. 감사기구의 회계감독<sup>5)</sup> 역할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감사기구의 회계감독 역할은 국내 및 해외 법규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해외 법규로는 감사위원회 의무를 정한 미국 SOX 조항, NYSE 상장규정 303A.07조(b)항 및 영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C.3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표 1 | 감사위원회의 회계감독 역할 관련 해외 법규

미국 SOX
<p><b>SEC.2. 정의.</b>                      (a) 일반적으로, 동법에서 각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란,                      (A) 상장회사의 회계 및 재무보고 절차 감독과 재무제표 감사를 목적으로 이사회에 의해 설립되고 이사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p>
미국 NYSE 상장규정

3) 감사기구에 의한 회계감독의 역할은 해방직후 일본 상법을 변형한 의용상법에서부터 법적으로 부여된 역할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의무는 2003년 12월 개정, 2004년 4월부터 시행된 외감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법제화한 이후 부여된 역할임  
 4) 자본시장법 개정 및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5) 광의로는 CFO조직 평가, 부정회계 발생위험 감시 등도 포함

**303A.07 감사위원회 추가 의무사항**

(b)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현장에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i) 위원회의 목적:

(A) (1) 상장회사의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감독하는 이사회에 역할을 지원, (후략)

(iii) 감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중략):

(B) 상장회사의 연간·분기 재무제표 감사내용을 검토 및 논의하기 위해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개최, (중략);

(C) 애널리스트 및 평가기관에게 제공될 상장회사의 재무정보, 영업실적 발표자료, 영업실적 전망에 대해 논의;

(중략)

(H)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감사위원회는 상장회사의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전체 이사회와 함께 검토를 수행해야 함, (후략)

**영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C.3.2. 감사위원회의 주요한 역할과 책임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회사의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회사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를 감독, 재무제표 작성에 활용된 중요한 재무보고 판단에 대해 검토;

- 회사의 내부재무통제에 대해 검토, (후략);

(후략)

C.3.5. 감사위원회는 임직원이 비밀리에 제기한 재무보고와 관련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후략)

C.3.8. 사업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가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수행한 일에 대해 별도로 기술하는 섹션이 있어야 한다.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무제표와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고려한 중요한 이슈 및 해당 이슈의 처리방안;

(후략)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재무제표와 재무보고 감독 업무를 명시한 국내 법규는 아래와 같다.

**표 2 |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회계감독 역할 관련 국내 법규**

상법
<p><b>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b>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sup>6)</sup>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447조의4(감사보고서)</b> 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415조의2(감사위원회)</b> ⑦제296조·(중략)·제447조의3·(중략)·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후략)</p>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p><b>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b> ① 회사(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li> <li>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li> <li>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li> <li>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li> <li>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6)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영업보고서를 말함

한편, 올해 7월 발표된 외감규정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sup>7)</sup>에 따르면, 분식회계 등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위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세부내용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통제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 또는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경우, 직무수행 소홀 정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하며,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고발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세칙 개정과는 별개의 사례이지만, 2015년에는 S사의 분식회계 소송에서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감사의 악의 중과실이 인정되어 총 손해금액의 10% 배상 판결이 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분식회계 발생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정보 작성에 있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의무가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감사기구의 외부감사인 감독 역할

감사기구의 외부감사인 감독 업무에는 외부감사인 선·해임,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외부감사인에 대한 성과평가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SOX 301조 (2)항에서는 미국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보수, 업무 감독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을 보유하며,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 감사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14년 10월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나온 이래 감사기구의 외부감사인 감독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규제당국의 최근 동향을 요약한 것이다.

표 3 |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외부감사인 감독 역할 관련 국내 법제도 동향

주요 내용	관련 법제도
외부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전	외감법 전부개정안(금융위원회),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금융감독원),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을 협의 및 결정하며 이를 문서화	상동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금융감독원),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특히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제시하는 핵심감사제와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 수행 시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항목을 논의 및 결정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외부감사인의 Warning Letter를 통해 즉각적으로 공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2년

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 신설”, 2016.07.18.

PCAOB Auditing Standard No.16에서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간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외부감사인 감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외부감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성과평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의 경우,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가 감사위원회(감사)가 외부감사결과에 대한 검토,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 감사의견의 변형이 있는 경우 적절성 평가 등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 기업들의 외부감사인 성과평가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수준이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평가가 보편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 PCAOB는 2015년에 Audit Quality Indicator(AQI)를 공표하였는데, 동 지표는 감사투입인력, 감사절차, 감사결과 등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을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데 목표가 있다.

#### 4. 결론

올해 5월, IOSCO<sup>8)</sup>가 47개국<sup>9)</sup>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해 수행한 설문조사<sup>10)</sup>에 따르면, 응답자의 96%인 45개국이 회계감독 및 외부감사인 감독을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미국의 사베인즈-옥슬리법 407조 및 국내의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자본시장법 제26조 제2항,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9조 제1항이 감사위원회 위원 중 반드시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 최근 국내 규제당국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 또는 시행하는 제도가 분식회계 발생 시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 등은 모두 회계감독 및 외부감사인 감독 역할이 감사기구의 주요한 의무임을 방증한다.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감사기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수년마다 발생한 국내 기업들의 대형 분식스캔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감사기구가 회계감독 및 외부감사인 감독이라는 기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고 기업의 재무상태가 장기적으로 건전해 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감사기구는 기업 관점에서는 분식과 이로 인한 파산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적으로는 경제주체 간의 신뢰 및 경기 활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8)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주로 증권시장 관련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를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1983년에 설립. G20, FSB(Financial Stability Board)과 협력하고 있음

9)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동 지역 포함. 우리나라는 미포함

10) IOSCO, "SURVEY REPORT ON AUDIT COMMITTEE OVERSIGHT OF AUDITORS THE BOARD", 2016.05., <https://www.iosco.org/library/pubdocs/pdf/IOSCOPD531.pdf>